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과 초기 포털뉴스 피해 조정, 중재 분석-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전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6일 경남 창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 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최인석 중재부장(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서론: 배경 및 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포털의 언론 기능 여부에 대한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8월 7일부터 포털은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서 권한만 누릴 수 없게 됐다.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포털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현행법 체계는 포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되고 있다. 이는 개정법 적용 두 달이 지난 지금 포털에 대해 단 한 건의 손해배상 등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필요한 후속조치를 더 심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개정법의 취지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분명히

언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향력만 누리고 법적 책임은 없는 포털을 언론 관련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언론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책무를 지우자는 입장이다. 즉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포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실제로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나타난 쟁점이라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초기에 논의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조정,



경남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참석한 9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재방향을 잡아가는 데 유용한 정보와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방식으로 포털을 규제하기란 앞으로도 매우 어려워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억강부약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본론 : 쟁점 및 케이스 스터디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포털뉴스 건에 대한 분석 및 쟁점 정리

인터넷 포털 뉴스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중재 신청사건 64건 중 현재 계류 중인 31건을 제외한 33건 가운데, 취하(25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의 사유를 보면 기사삭제(15건)가 가장 많고 보도약속, 보도이행 등이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포털은 보도와 관련한 정정이나 반론의 경우, 뉴스제작사에 내려지는 결과를 기다려 단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의 대상에서 여전히 자유로운 모습이다. 포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영역에 한정돼 규제의 대상에 올라있을 뿐이다. 현재와 같은 조정, 중재

1) 피해자들의 소극적 의지와 포털에 대한 이해 부족

언론피해를 당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자들은 원제작자에게 정정, 반론 혹은 손해배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 뉴스 제작사의 잘못이고 포털 역시 여전히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취하가 가장 많으며 취하의 사유도 ‘기사삭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물러나는 편이다. 포털은 처음부터 정정, 반론 보도에는 자유롭기 때문에 ‘기사삭제’ 정도를 규제로 볼 수 있을까. 기사삭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유포, 확산된 부분에 대해 포털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현행법 체계 및 대법원 판결의 영향

현행법 체계로는 포털에 책임을 물리기가 쉽지 않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9년 4월 19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포털도 언론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상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일 것, 둘째 그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 셋째 그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 등이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제한적으로나마 물리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포털에 대한 이런 대법원의 접근과 인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일선 조정과정에서 포털에 책임을 물리는 데 일종의 심리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사를 회원사로 거느리는 ‘공룡 유통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정정, 반론, 손해배상 정도다. 이 세 가지는 뉴스와 정보를 제작하는 언론사에는 모두 해당하지만 정작 포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해배상 하나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원래부터 뉴스제작사를 대상으로 만든 규제법이며 포털처럼 유통, 매개회사 규제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지만 그 규제의 내용은 소극적인 ‘기사삭제’ 혹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으로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전술한 까다로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거나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제17조의2)만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입법미비로 처음부터 포털의 특성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에 대한 천착이 부족했던 결과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3) 개인의 법익 피해 구제와 포털의 영업권 보호의 형평성

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다. 오보든 왜곡보든 이미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 피해구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삽시간에 전방위로 퍼져나가는 속성 때문에 포털의 매개, 확산의 역할은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법익을 포털의 영업권 우위에 둘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이 더욱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2. 케이스 스터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통해 본 언론사와 포털의 영향력, 규제의 형평성

지금까지 법적 논의나 중재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살펴 보면 비교적 개인의 법익보다 포털의 법익 보호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기술적인 문제, 법체계상의 한계 등으로 책임과 권한은 막강해진 ‘현대판 거인’ 포털에 대해 제한된 수단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 보다 구체적 사건을 인용하여 공론의 내용과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이 사건은 2009년 11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초기 보도의 논조에서 크게 달라진 사건이다. 이 보도 내용과 건수, 예상 피해, 부과할 수 있는 규제방안, 피해자의 법익 보호를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시작과 내용을 살펴본다.

1) 논란 속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전라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그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성격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2009년 10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초기 언론의 보도와 현재의 보도 논조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법원의 진실이 나올 무렵이면 세인의 망각 속에 희미해진 과거사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언론의 보도행태와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이 사건을 언론중재위

원회에서 뉴스제작사와 포털의 책임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올라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불행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와 검찰의 비과학적인 수사기법, 포털의 부작위에 의한 매개 및 확산과 그 영향력과 책임감, 일반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7월 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언론은 “‘청산가리 막걸리’ 2명 사망, 2명 입원” 식으로 단순,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9월 중순 검찰에서 일방적인 수사발표를 하자 언론은 일제히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 때문”,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불륜 숨기려 범행”, “15년 성관계 부녀, 짜고서 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등으로 보도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검증은 없고 ‘사실로 믿는 관례’를 그대로 반복, 세상을 놀라게 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주범이라는 딸의 영악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법적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한 개인의 피해구제 차원에서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먼저, 언론이 형사사건의 진실이 나오기도 전에 마치 검찰의 발표를 진실인양 대서특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점보도의 시점을 현재처럼 검찰의 수사발표 시점에 의존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 언론은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대, 유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포털의 책임도 면책될 수 없다.

2)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신문사와 포털의 보도 비교

사건 초기의 중립적 보도가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제목과 기사내용을 모든 매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와 내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제 이 내용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결과 다음과 같다.

－ 중앙과 지방 신문사에서 확인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목과 보도기사를 포털에서 훨씬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

－ 포털에는 중앙, 지방 신문, 인터넷 언론, 방송사, 통신사 등 모든 매체의 보도를 동시에 접할 수 있어 확산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으로도 포털에서는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통, 확산됐다.

－ 이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룬다면 포털에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논리처럼 뉴스를 단순 매개 했다면서 각 해당 언론사의 정정·반론 보도를 받은 뒤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 최선일까.

III. 결론: 쟁점정리 및 대안제시

포털에 대해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포털의 자체 노력을 폄하해서도 아니다. 포털이 공론의 장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디어 강자로 부상한 이면에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의 자유로운 유통과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상은 물론 어느 매체에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 다만 자유와 권한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그것이 불균

형을 이루게 되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계할 일이다.

포털의 대표주자격인 네이버의 경우 이미 기존매체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막강한 파워 매체로 자리 잡았다. 매출액에서도 기존의 미디어를 훨씬 추월했거나 추월 중이다. 영향력 면에서도 이미 기존의 강력한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다.

따라서 결론과 함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규제수단의 효율성에 대해 =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수단과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2) 작위와 부작위의 적용논리에 대해 = 포털에 대한 책임은 작위의 경우는 물론 부작위의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 책임의 정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부작위에 의한 단순한 저장, 매개 행위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3) 포털의 지위 변화에 대해 = 언론사와 포털은 형식적으로는 제작사와 유통회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지만 그 영향력과 수익차원에서 포털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다. 포털과 계약을 맺지 못하는 언론사는 검색순위에서 멀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포털은 언론사 선택권도 가진 만큼 불법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대처할 수단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주로 책임을 물리는 방식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 론

사 회 최 인 석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중재부 중재부장

최인석(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창룡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경남21환경교육연합회 실장) : 포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규제도 도의적인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적인 규제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연예인의 미성년자 가족의 초상 공개가 법과 보도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초상 공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가리 사건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매개한 포털의 책임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포털은 단순히 언론보도를 매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무분별한 댓글과 악플이 문제이지 기사를 매개한 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포털도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상인(경남도민일보 기자) : 우리 신문의 기사는 포털

에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털의 기사검색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포털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재석(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 : 포털의 기사는 기사를 올리는 신문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포털이 기사를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이익은 포털이 가져가고 책임만 언론사에 떠넘기고 있는데,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룡(발제자) : 오늘의 주제발표내용은 포털의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 중, 예를 든 미성년자의 초상 공개는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배경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자는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생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포털의 매개가 무슨 잘못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발표를 언론이 예단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보도들을 포털이 게시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포털에 의해서 더욱 피해가 확산되고 있

는데 기사삭제 등의 미온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개도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최인석 : 포털의 매개기능과 관련하여 충북과 전북지방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생산하는 기사제공자이고 포털은 이 기사를 유통시키는 유통사업자입니다. 상품으로 비유하면 언론사는 상품을 만든 곳이고 포털은 상품을 판매하는 마트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불량일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만든 곳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마트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트도 유통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발표내용을 과장 각색하여 보도했다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도(경남신문 정치부장) : 기사가 문제되어 언론중재과정에서 기사삭제 등으로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포털에 남아있는 기사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만 신문사가 성의를 가지고 기사를 삭제하고 포털 측에게 신속히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다면 신문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동(경남신문 논설실장) : 포털의 책임에 대해 외국 사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우리나라와 같이 포털을 법으로 규율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포털에 대해서도 언론과 같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지만 문제가 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하재석 : 기사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로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다른 곳으로 퍼 올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사를 작성하여 올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백경석(중재위원) : 기사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퍼 올려져 문제가 되었다면 포털과는 달리 개인 홈페이지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창룡 : 저도 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기자에 대해 기사를 올린 적이 있는데 해당 기자가 벌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전화하여 벌을 받고 나왔는데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아직도 사이버 기자로 나온다면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전화하여 삭제 요청하고 전화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삭제가 되지 않아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삭제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여 두는 등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사를 올린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경숙(경남도의회 의원) : 각종 선거에서 언론사의 기

사가 문제가 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포털을 통해 퍼 올려진 기사는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석 :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다양한 사례를 예정하여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시행하면서 피해구제 조정레나 판례가 쌓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피해도 구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룡 : 선거와 관련하여 어느 지방지가 연합뉴스 제 공기사에 의도적으로 내용을 덧붙여 선거에 임박하여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 해당 후보자는 낙선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해당 지방지가 연합뉴스 전문 기사를 각색이나 윤색 없이 그대로 보도했는지, 기사를 보도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속히 구제할 수는 없어도 사후에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안기한(경남우리신문 발행인) : 포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는데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도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 포털의 책임과 피해구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도 피해구제 대상이 되었음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아직 많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우리 위원회는 매년 3개 지역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언론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도 취합하여 좀 더 나은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것입니다.

최인석 :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치고 전에 윤구 부위원장의 총평을 들겠습니다.

윤구(부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발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사회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7일부로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에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권력이 되어버린 포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자리도 마련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은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